



2019-교육홍보-164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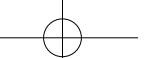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/ 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644-4544

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~~대폭~~ 바뀌었습니다!

##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

이것만은 꼭 알고  
지켜야 합니다





## 목차

## ▣ 밀폐공간

유형	내용
출입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금지</li><li>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</li></ul>
측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과 일시 중단하였다가 재진입하는 경우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</li></ul>
환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산소 18% 이상 23.5% 미만, 탄산가스 1.5% 미만, 일산화탄소 30ppm 미만, 흉화수소 10ppm 미만</li></ul></li></ul>
교육·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응급조치 요령, 보호구 착용, 안전한 작업방법 등 교육</li><li>구조용 장비 사용,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,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 실시</li></ul>
구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</li></ul>
인원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근로자 입장 및 퇴장 시마다 인원점검</li></ul>
감시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</li><li>밀폐공간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설치</li></ul>
보호장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,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근로자 피난 또는 구출에 필요한 기구 구비</li><li>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추락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,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</li></ul>
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밀폐공간 내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·시행</li></ul>

##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세요!

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내 미디어 현장배송 또는 미디어 홈페이지 (<http://media.kosha.or.kr>)에서 미디어를 신청해서 받아보세요.



## ▶ 사업장 정보입력을 통해 간단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사업자등록번호, 산재보험가입번호(사업개시번호) 입력 및 조회 후 신청 가능

## ▶ 사업장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선택하신 자료를 포장하여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.

## ▶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운영 기준 안내입니다.

많은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코자 부득이하게 신청 및 배송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
1. 사업장별 월 최대 90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1박스당 최대30부 포장)

※ 사업장별 누적 부수가 확인되어 초과 시 신청 불가하여, 익월 신청 가능

2. 배송비용은 신청자 부담(착불)으로 운영됩니다. (1박스당 3,000원)

3. 신청 및 재고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